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즉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로서 C가 본건 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으려는 C사로서는 본건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등록하여야 하나, 그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송재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건설경제. 2017.1.3. 게재〉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항목



1. 현황

최근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항목'이 문제되어 양측이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감정인들이 스프링클러 헤드에 표기된 r2.3, r2.6의 해석을 오인함으로

써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대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해

드)에 의하면, 헤드 설치거리는 3.2 이하(형식 인증의 유효살수반경)로 규정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제15조에 의하면, 전방수량의 60% 이상이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cm(r2.3의 것에 한한다) 또는 반경 330cm(r.2.6의 것에 한한다)의 범위 내에 살수되고 또한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차가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문제점

그런데 국내에 제작, 유통되는 제품을 r2.3, r2.6에 한하고 스프링클러 헤드에 기재된 r2.3, r2.6의 표기는 검정시험 높이 1.2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 살수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아파트의 평균 층고가 2.6m임을 감안하면 1.2m보다 유효 살수반경이 넓어지게 되는 바 설계도서에 표기된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은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즉, 위 각 제품들로 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에 기재된 표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수량, 반자높이,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간격 등으로 모두 고려하여 살수범위에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밝

혀야 하는 것임에도 일부 감정인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r2.3, r2.6이 표기된 제품으로는 유효 살수반경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부 판례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2. 선고 2014가합51706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는 r2.3 제품인데, 이는 1.2m 높이에서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r2.3m라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는 2.4m 높이의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점, 2.4m 높이에서 살수하는 경우 살수반경이 2.3m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유효 살수반경은 해당 아파트의 반자높이를 고려하여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5. 결론

결국, 스프링클러 헤드에 r2.3, r2.6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정시험 높이 1.2m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살수반경이 미달하는지 여부는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 해당 아파트 층고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단순히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기만으로 해당 아파트의 유효 살수반경이 미달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건설경제. 2017.1.18. 게재>

